

의안번호	2215725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6. 1. 14.
추 계 번호	25B7362

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8조(벌칙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2.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※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·보관·진열·판매·유통하거나 공급한 비료업자에 대한 벌칙 삭제	의무·재량 규정
	안 제30조(과태료) 제1항 신설	제1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1항) ※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·보관·진열·판매·유통하거나 공급한 비료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8조(벌칙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안 제30조(과태료) 제1항 신설	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¹⁾은 비료업자가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·보관·진열·판매·유통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은 ‘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·보관·진열·판매·유통하거나 공급한 비료업자’에 대한 제재수단을 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’에서 ‘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’로 변경하려는 것임

[표 1]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제재수단

구 분	현행	개정안
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·보관·진열·판매·유통하거나 공급한 비료업자	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	•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자료: 현행법 및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·보관·진열·판매·유통하거나 공급한 비료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변경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제재수단 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의 증감, 과태료의 부과금액 등을 예측할 수 없고,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²⁾,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감소 및 과태료 수입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1) 제14조(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)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·보관·진열·판매·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

제2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2. 제14조제2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

2)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형법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, 형법 규정에 따른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